

독일의 아동양육지원법제

I. 서론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급격히 대두되면서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개입의 중요성이 다시금 고려되고 있다. 고령사회의 문턱에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1.2명)에 대한 대처가 효과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는 사회적 충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아동학대의 40% 이상이 한부모가정이나 재혼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만큼, 우리 법원은 이혼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5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문제가 여러 원인에서 비롯되겠지만,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저출산의 주요원인이 ‘일·가정 양립의 고충’이라는 점에서 지금은 아동양육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예방은 물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미 우리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서구 선진국에서 어떻게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그들의 ‘아동양육지원법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낮은 출산율(약 1.4명)을 보이면서 비교적 촘촘한 아동의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 독일의 ‘양육지원법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II. 아동양육지원법제 및 법률관계

1. 아동양육지원법제의 개요

독일 「기본법」 제6조에 의하면, 아동양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부모에게 있다. 국가는 자녀의 부양과 교육에 대한 부모의 활동을 감시하며,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자녀를 방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률적 근거에 의해 가족과 분리시킬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여성은 누구나 사회적 보호와 부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아동양육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사회법전」 제8권을 기본으로 하며, 개별 연방법률로는 「연방부모휴직수당 및 육아휴직법」, 「양육비지원법」, 「연방아동수당법」, 「연방교육지원법」 등을 갖추고 있다.

먼저, 「사회법전」 제8권¹⁾은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으로서 아동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한다.²⁾ 동 법은 고권적 규범으로 사회적 급부와 조직기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아동 및 청소년의 동등한 성장가능성과 보호를 과제로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을 광의로 파악하면, 「민법전」의 가족법 규정, 「입양소개법(AdoptionsvermittlungsG)」, 「청소년보호법(JÖSchG)」, 「청소년법원법(JGG)」을 포괄한다.

모성보호에 관해서는 1952년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을 처음으로 제정하였으며, 관련 법령으로 「제국보험령(RVO)」과 「사회법전」 제5권이 있다. 또한 양육수당과 관련하여 1985년 「연방양육수당법(Bunde-

serziehungsgesetz, BErzGG)」³⁾을 제정하였고, 1986년부터 시행되어 2006년까지 양육수당과 육아휴직(Erziehungsurlaub)⁴⁾을 규정하였다. 이는 2006년 12월 5일 「연방부모휴직수당 및 육아휴직법(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BEEG)」⁵⁾의 제정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개정된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교대로 휴직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수당(Erziehungs geld) 대신 육아휴직수당(Elterngeld)을 지급한다. 새로운 육아휴직수당은 정액으로 지급되었던 기존의 양육수당과 달리 임금대체급여로서 휴직 전 임금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또한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가 용이하도록 휴직기간에도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장의 직업능력향상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독일의 아동양육지원제도의 핵심이 되는

1) BGBl. I. 1163.

2)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구분은 기본적으로 아동(Kinder)은 14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은 14세 이상 17세 이하, 성년기 청년(Junge Volljährige)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Stefan Muckel, Sozialrecht, 2. Auflage, Verlag C.H.Beck, 2007, 3. Teil Rn. 41.).

3) BGBl. I S. 2154; 출산여성에 부여된 모성휴가(Mutterschaftsurlaub)를 대체한 육아휴직으로 부모에게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기회를 부여하고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4) 2001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의미하는 용어인 Erziehungsurlaub이 Elternzeit로 변경되었다.

5) BGBl. I S. 2748.

● ○ 외국법제동향

아동수당은 「연방아동수당법(Bundeskindergereldgesetz: BKGG)」⁶⁾을 기준으로 한다. 동 법은 1995년에 제정되어 2009년 전면 개정⁷⁾된 바 있다. 전체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급여규정(§§ 1 ~ 6a), 기관 및 절차규정(§§ 7 ~ 15), 벌금조항(§ 16), 경과규정(§§ 17 ~ 22) 등이다.

〈표 1〉 「연방아동수당법」의 구성

제1조 수급권자(적용대상)	제8조 비용
제2조 자녀의 개념	제9조 신청방법
제3조 다른 청구권과 경합하는 경우 조정요건	제10조 정보제공의무
제4조 기타 금전적 급부내용	제11조 지급
제5조 청구의 개시와 종료	제12조 상계
제6조 자녀지원금의 액수	제13조 관할지
제6조의a 사회법에 따른 아동수당	제14조 결정
제7조 관할	제15조 법적구제수단
제7조의a 개인정보의 전달	제16조 벌금

한편,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연방법으로는 2008년 12월 16일 이후 「아동지원법(Kinderförderungsgesetz: KiföG)」⁸⁾이 시행되고 있다. 동 법은 연방재정조정법, 연방교육지원법, 입양소개법, 소득세법, 보육시설 확대법 및 사회법전 제5권, 제6권, 제8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2013년까지 3세 미만 아동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확대를 규정하였다.⁹⁾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로는 재정과 관련한 「아동보조금재정법(Kinderbetreuungsfinanzierungsgesetz: KBFG)」¹⁰⁾과 시설확대를 위한 「아동의 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법(Tagesbetreuungsausbaugetz: TAG)」¹¹⁾이 있다. 후자는 보육에 관련한 「사회법전」 제8권 및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단계 개혁으로 같은 해에 「아동 및 청소년부조 개선법(Gesetz zur Weiterentwicklung der Kinder- und Jugendhilfe: KICK)」¹²⁾을 제정하여 보육시설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

6) BGBl. I S. 1250, 1378; ber. 1996 I S. 714.

7) BGBl. I S. 142, ber. S. 3177.

8) 2007년 12월 18일에 제정(BGBl. I S. 2403)되고 최근 개정은 2014년 12월 22일에 있었다(BGBl. I S. 2411).

9) 2013년 8월 1일부터 3세 미만 아동은 모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요되는 재정은 약 120억 유로로 추산되며, 연방이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21억5천만 유로를 지원한다.

10) BGBl. I S. 3022.

11) BGBl I S. 3852 vom 27.12.2004.

12) BGBl I S. 2729 vom 08.09.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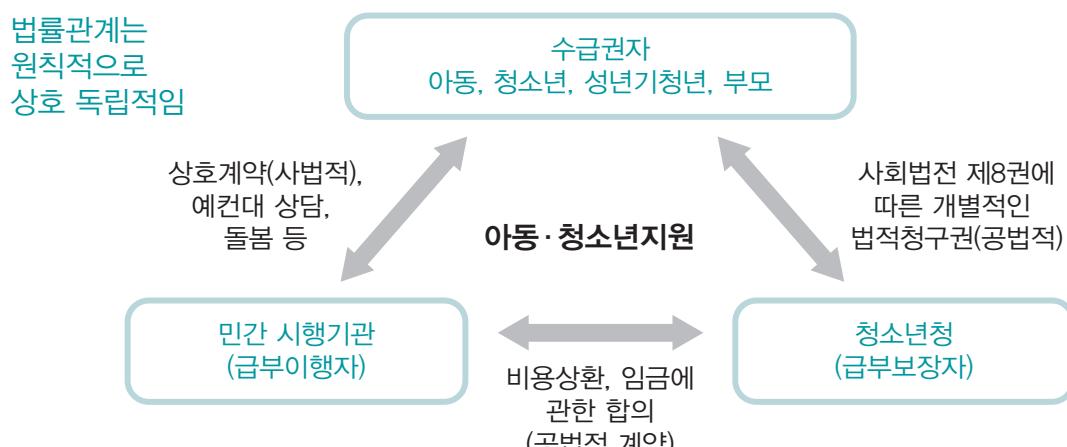
밖에 아동의 교육지원은 「연방교육지원법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BAföG)」¹³⁾을 근거로 하며, 지원금 등의 적극적 지원뿐 아니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을 통하여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2. 아동양육지원법제의 법률관계

「사회법전」 제8권에 따른 아동양육지원은 사회교육적 성격을 가지며, 각 주의 다양한 법률과 민간복지기관의 참여를 통해 구체화된다. 기타 아동에 대한 돌봄과 복지 관련 사업은 청소년청(Jugendamt)이 관할하며, 감독기관(Wächteramt)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양육지원과 관련된 「사회법전」 제8권의 다양한 과제들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인 동시에 아동 복지를 위한 친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동 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있다. 다만, '기타 아동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청소년청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으며, 일부 업무에 대해 인증된 민간기관의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사회법전」 제8권 제76조). 그밖에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 내에 적법하게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을 인정하고 있다(사회법전 제8권 제6조 제2항).

〈그림 1〉 아동양육지원제도의 법률관계



출처: Rätz-Heinisch(2010), S. 71.

13) BGBl. I S. 1952; 2012 I S. 197 vom 7. Dezember 2010.

III. 아동양육의 지원형태 및 주요내용

1. 「사회법전」 제8권의 지원형태 및 대상

현대적인 사회급부법으로서의 「사회법전」 제8권이 규정하고 있는 과제들은 아동 및 청소년에서 성년기 직후의 청년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범위에 교육 및 고용조치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소관기관의 재량사항으로 일반적인 급여지원과 개별적인 사회화 지원이 연관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가정 내 양육지원은 공공의 청소년지원기관(청소년청)의 사회기반적 의

무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가족 형성, 일반적인 자문, 여가프로그램이나 가족휴가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대부분 양육 및 가정상담 지원을 주된 과제로 한다. 이러한 지원에 대한 청구권은 부, 모, 아동, 청소년에게 있다(사회법전 제8권 제16조).

사회적 급부이며 동시에 교육적 성격을 가지는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은 아동복지에 부합하고 아동의 잠재력을 성장시키고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여부를 심사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은 사회교육적 측면에 유연하고 복합적으로 제공하며, 지원형태는 용이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2〉 아동양육지원의 형태 및 대상

지원형태	시행사업	주요대상
가족지원	양육상담(SGB VIII § 28)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사회적 단체활동(SGB VIII § 29)	3세 이상 아동 및 청소년
	양육지원(SGB VIII § 30)	3세 이상 아동 및 청소년
	사회교육적 가족지원(SGB VIII § 31)	3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가족보충	부/모와 아동을 위한 공동의 주거형태 (SGB VIII § 19)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정
	돌봄단체(SGB VIII § 32)	아동 및 청소년
가족대체	전일돌봄(SGB VIII § 33)	특히 3세 미만 아동
	가정내 양육 혹은 주거형태(SGB VIII § 34)	아동/청소년/성년기청년
	집중적인 사회교육적인 개인적 돌봄 (SGB VIII § 35)	청소년/성년기청년

출처: www.kinder-jugendhilfe.info 20.09.06; Rätz-Heinisch(2010), S. 48(재구성).

2. 임신과 모성보호

「기본법」 제6조 4항은 “모성은 사회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성보호법」을 통해 근로관계에 있는 모든 임산부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있다. 「모성보호법」에 의하면, 임신한 여성은 임신사실을 알게 된 즉시 사용자에게 임신 및 출산예정일을 고지해야 하고,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한 사실을 즉시 관할 ‘영업감독청(Gewerbeaufsichtsamt)’에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모성보호법 제5조 제1항).¹⁴⁾ 또한 임신기간 동안 및 출산후 4개월까지 임산부에 대한 해고는 금지되고, 모성보호기간인 산전 6주부터 산후 8주(조산 또는 쌍생아의 경우 12주)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

이러한 모성보호기간 동안에 소득이 감소되지 않도록 ‘산전·후 휴가급여’에 해당하는 ‘모성수당 및 모성수당지원금’이 지급된다. 우선, 법정질병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질병금고(Krankenkasse)에서 ‘모성수당(Mutter-

schaftsgeld)’¹⁵⁾을 지급하지만, 질병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방의 부담으로 최고 210유로를 지급한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그 기간동안 최고 13유로의 모성수당과 근로자가 지난 13주(주급인 경우) 또는 3개월(월급의 경우) 동안 받은 평균임금(순임금)과의 차액을 ‘모성수당지원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모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이러한 ‘모성수당 및 모성수당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질병금고와 사용자에게 각각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성보호기간 동안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연방의 부담으로 ‘연방보험청(Bundesversicherungsamt)’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 신청은 질병금고에서 관할한다.¹⁶⁾

3. 부모휴직 및 육아휴직수당

(1) 부모휴직

부모휴직은 무급의 육아휴직을 말하며, 자녀와 동거하며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러한 부모휴직은 부모휴직수당

14) 조성혜, “독일의 양육 관련 법제와 출산장려정책”,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2007, 566쪽.

15) 제국보험령(RVO) 제200조 제2항에서 모성수당액은 일일 최고 13유로로 규정하고 있다.

16) 조성혜, 위의 논문, 568쪽.

과는 별도로 부여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정된다. 휴직신청은 유연하게 할 수 있으며, 일부사용 또는 부모 일방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교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동법 제15조). 다만, 휴직 개시 7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휴직 개시일, 기간 및 단시간근로에 취업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제1항).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여성의 산전·후 휴가를 포함하여 자녀가 3세가 되는 날까지이다.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에 대해 휴직 신청을 할 수 있다.

(2) 육아휴직수당

독일정부는 지속되는 저출산율의 근본적인 원인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에 있다고 보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휴직수당 및 휴직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부모의 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생후 3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를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한편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지원은 육아로 인하여 부모가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에 지원하는 제도로서 노동법적 지원에 해당한다.

우선, 육아휴직수당은 독일에 주거지를 두거나 상주하는 부 또는 모로 동거하는 자녀를 직접 보육·양육하는 자로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인 경우에도 유럽연합국의 국적을 가졌거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정식 노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독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출산 후 14개월이며, 원칙적으로 부모 중 일방은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육아휴직수당법 제4조). 따라서 부모가 교대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 비로소 14개월 동안의 육아휴직수당이 온전히 지급된다. 그러나 소득이 감소하거나 자녀의 건강에 유해하거나 질병 또는 중장애로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 밖에 산전·후 휴가기간에 지급받은 모성수당 및 모성수당 지원금은 육아휴직수당에 산입되며, 2개월분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동법 제3조).

통상 육아휴직수당액은 전년도 평균임금(순임금)의 67%에 해당되며, 1,800유로를 상한으로 한다(동법 제2조 제1항). 가정주부, 학생, 실업급여II의 수급자 및 기타 소득

이 없는 자에게는 최저수당으로 월 300유로를 지급한다. 휴직을 하지 않은 배우자의 육아휴직수당에 산입하지 않으며, 출산 전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정 산정한계 소득인 2,700유로를 최고액으로 한다.

(3) 육아휴직수당 플러스(ElterngeldPlus)

‘육아휴직수당 플러스’는 2015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된다. 이는 시간제 일자리와 육아휴직수당을 연결하여 자녀 출산 후에 시간제로 근무할 경우에 육아휴직수당을 확대적용함으로써 이중의 혜택을 인정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수당에서 1월은 육아휴직수당 플러스에 대해서는 2월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신청한 부모는 기본 육아휴직수당을 24개월 동안 절반만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공동육아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보너스(Partnerschaftsbonus)로 4개월간의 추가 육아휴직수당 플러스를 받게 되고, 휴직기간은 32개월까지 연장된다.

4. 보육지원금(Kinderbetreuungsgeld)

독일에서 아동의 보호, 교육, 지원은 제도적으로 유치원, 유아원 및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진다. 보육시설은 각 주에서 사용하는 명칭에 상관없이 다양한 형

태를 포괄한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보모(Tagesmutter)의 돌봄을 받거나 Krippe, Kindergarten, Kita 또는 Hort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이 된다.

국가적으로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1차적인 조치는 「아동의 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법(TAG)」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3세 미만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확대하도록 하였는데, 2010년 10월까지 유치원 및 유아원 등 보육시설에서 23만개의 자리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동 법에 의하여 보육시설에 맡기는 대신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보육지원금이 지급된다. 2014년부터 매월 150유로를 지급하며, 재원의 조달은 각 주법에서 규정한다. 그 밖에 보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2분의 1 즉,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4,000유로까지 세제지원을 받는다.

5. 아동수당 및 보조금과 소득공제

(1) 아동수당(Kindergeld)

18세 이상 성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의 필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아동청소년 지원에서 일반적인 사회부조 영역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인격성장과 스스로 생활

● ○ 외국법제동향

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할 때까지 청소년지원을 연장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제41조). 이 조항에 의하면, 심사를 통해 개별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21세까지 청소년 지원(Fortsetzungshilfe)이 연장되고, 별도로 특별한 지원형태인 보호연장지원(Nachbetreuungshilfe)도 제공된다.

아동수당은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동의 기본적인 부양을 위해서 2016년부터 첫 번째 자녀와 두 번째 자녀에 대해서 매월 190유로를 지급하며,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196유로, 네 번째 자녀부터는 221유로를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연방고용공단(Bundesagentur für Arbeit)¹⁷⁾의 관할 가족금고에서 자녀의 출산 직후 신청된다. 이러한 아동수당은 18세까지 지급되며, 성인이 되었지만 실

업상태에 있는 경우 21세까지 연장하여 지급된다.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소득이 있어도 매우 적은 경우에는 25세까지 연장된다. 연방자원봉사 또는 국제 청소년 자원봉사 서비스에 참가할 경우에도 25세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이 연장된다.

2015년 7월 10일 연방참의회에서 가족정책적 급여를 인상하기로 동의하면서 기본공제, 자녀공제, 아동수당, 아동보조금이 2015년 1월 1일에 소급하여 증액되었다. 기본공제는 118유로 정도 소급 인상되었고, 2016년부터 180유로가 더 증액된다. 자녀공제 역시 144유로 정도 증액되었고, 2016년부터는 96유로가 더 증액된 금액이 적용된다. 아동수당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4유로가 증가되었고, 2016년에 추가로 2유로가 더 증액된다.¹⁸⁾

〈표 3〉 아동수당액

자녀수	2014.12.31.까지	2015.1.1.부터	2016.1.1.부터
1 ~ 2번째	184 유로	188 유로	190 유로
3번째	190 유로	194 유로	196 유로
4번째 부터	215 유로	219 유로	221 유로

17) ‘연방고용공단(BA)’는 고용노동 관련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공법인이다.

18) <http://www.kindergeld.org> 참조(2016.3.4.).

아동수당에 있어서 중요한 개혁은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있었던 소득제한의 폐지이다. 이로 인하여 성년에 이른 자녀에 대해서도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이 계속 지급될 수 있다.

아동수당의 수급권자는 부양할 동거자녀가 있는 부모 또는 양육권자 즉, 양부모, 의붓부모, 위탁부모, 조부모이다. 물론 수급권자는 양육권자로서 독일 내에 거주하거나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무제한의 조세의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거주 및 상주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2) 아동보조금(Kinderzuschlag)

「연방아동수당법」 제6a조에 따른 아동보조금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2005년 ‘하르츠 IV법’¹⁹⁾과 함께 도입된 아동보조금은 실업급여 II를 수급하는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근로동기를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이 빈곤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즉, 아동보조금은 ‘아젠다 2010’의 ‘하르츠 IV법’의 보충수단으로 기능한다. 연방가족부에 의하면, 아동보조금

을 수령하는 규모는 2012년 1월을 기준으로 약 30만명에 달하였다.

아동보조금은 실업급여II 수급권자일 것을 조건으로 하며, 부모, 양부모, 의붓부모가 동거하는 자녀를 양육할 수는 있으나 생계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아동보조금 지급을 위한 최저소득기준은 부부인 경우에 월 900유로 한부모인 경우에 월 600유로로 한다. 현재 지급액의 수준은 매월 160유로이며, 2015년 비해 20유로가 증액되었다. 아동보조금은 2007년까지는 자녀수와 상관없이 최대 36개월까지 지급되었으나 2008년 이후에는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수당청구권이 있는 18세부터 25세까지 지급된다. 그 밖에 연방고용공단 가족금고에서 관할하며, 아동수당과 함께 지급한다.

(3) 아동소득공제

독일의 아동양육지원은 아동수당과 같은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외에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형태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소득세법 제32조 제6항).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수당과 소득공제 중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선택할 수 있으며, 국세청(Finanzbe-

19) Vierten Gesetz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zum 1. Januar 2005.

hörde)의 유리성 심사(Günstigerprüfun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부모에게 유리하다.²⁰⁾

2015년 개정으로 2016년부터 부모 모두에 대해서 2016년부터 자녀당 연간 소득 7,248유로까지 면세되며, 2015년 7,152유로에 비해 96유로가 증액되었다.²¹⁾ 이혼한 부모 일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액은 절반으로 하며, 2016년부터 3,576유로에서 3,624유로로 증가되었다.²²⁾

6. 교육지원금(BAföG)

「연방교육지원법(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BAföG)」²³⁾에 근거한 아동보조금은 아동빈곤을 방지하고 아동이 빈곤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저소득계층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보조금 수급권자는 사회급여의 일종으로 학업물품, 교통수단이용, 소풍, 수학여행 또는 급식 및 체육활동보조금 등의 교육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마이스터 교육지원금(Meister-BAföG)’은 수공업 및 다

른 직업교육을 받는 자의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연방교육지원법」 대신 「교육연수지원법(Aufstiegsfortbildungsförderungsgesetz: AFBG)」에서 규정한다.

교육지원금(BAföG)은 특별수당으로 동거하는 10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113유로를 지급한다(연방교육지원법 제14b조). 대학생의 경우에는 부모가 학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하며, 670유로를 최고액으로 한다. ‘마이스터과정’에 대해서는 2010년에 일반적인 연령기준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조정 하였다.

대학생인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50%, 무이자 대출로 50%까지 교육비를 지원한다. 상환금은 지원금의 절반이며, 1만유를 상한으로 한다. 또한 무소득자이거나 저소득자인 대출자가 1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장애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상환개시는 최대 지원기간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상환기간은 20년, 상환액은 월 105유로를 최소한으로 한다. 다만, 출자의 소득이 월 1,070유로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상환을 중지할 수 있다.

20) 소득공제가 유리한 월소득은 한부모의 경우 33,500유로, 부부의 경우 63,500유로를 기준으로 한다.

21) 7,248유로의 연간소득공제액 중에서 부양, 양육, 교육비용이 2,640유로, 최저생계비가 4,512유로를 차지한다.

22) <http://www.kindergeld.org/kinderfreibetrag.html> 참조(2016.3.4.).

23) 동 법은 사회법전의 특별한 구성부분으로 사회법전 제1권 제68조에 따라 적용된다(BGBL I S. 1952; 2012 I S. 197 vom 7. Dezember 2010).

7. 특별지원금

(1)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지원

「양육비지원 또는 양육지원급여를 통한 한부모가정의 자녀보호를 위한 법률(Unterhaltsvorschussgesetz: UhVorschG, 이하 양육비지원법)」²⁴⁾은 「사회법전」 제8권에 대한 특별법 규정에 해당하며, 한부모 가정²⁵⁾의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1980년 아동에 대한 사회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청구권자가 한부모 가정의 아동 자신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아동수당과 구별된다.

원칙적으로 양육비지원 수준은 「양육비지원법(UhVorschG)」 제2조에서 직접 규정하며, 최저부양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수준을 정한다(민법전 제1612a조 제1항).²⁶⁾ 예외적으로 2015년에 동법 제11a조에서 규정하였다. 지원기간은 최장 72개월간이며, 지급은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청(Jugendamt)’에서 관할한다.

납세의무가 있고, 동거하는 자녀가 1명이

상 있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연간 1,908(월 159)유로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자녀 1명이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240유로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세등급 II에 속하는 한부모 가정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당해 연도에 소득세 감면을 통해 미리 받게 된다. 2016년부터 6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145유로, 12세 미만인 아동인 경우에는 194유로를 지원하고, 12세부터는 지원하지 않는다.

〈표 4〉 양육비지원금

연도	아동	
	5세까지	5세에서 11세
2008	125 유로	168 유로
2009	117 유로	158 유로
2010. 1 ~ 2015. 6	133 유로	180 유로
2015. 7 이후	144 유로	192 유로
2016. 1. 이후	145 유로	194 유로

(2)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1) 통합프로그램 등

- 24) Gesetz zur Sicherung des Unterhalts von Kindern alleinstehender Mütter und Väter durch Unterhaltsvorschüsse oder -ausfallleistungen; 1979.7.23., BGBl. I S. 1184.
- 25) 양육비지원법에서 자녀가 성년에 이르거나 더 이상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또한 더 이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으로 보지 않는다.
- 26) 양육비지원 수준은 2007년까지 「규정금액 시행령(Regelbetrag-Verordnung)」의 원칙에 따라 양육자인 부모일방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절반으로 산정하였다. 아동수당 전체를 산입하지 않은 명목상 최저생계급여가 더 적었고, 결과적으로 2007년과 2008년 구 서독지역에 지급된 양육비지원금액은 동일한 수준이었다.

장애가 있는 자녀는 대부분 부모의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 이는 가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개별적인 상황에 적합한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은 '모든 아동이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관계없이 함께 학습한다'는 이념에 따라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 역시 장애가 없는 아동과 동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은 교육과 돌봄이라는 2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3세 미만 아동과 3세 이상 아동을 구분하여 장애가 없는 아동과 함께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3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에 대하여 연방차원의 통일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재정지원도 연방이 아니라 주의 책임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법전」 제8권의 아동청소년지원과 「사회법전」 제12권 사회부조 차원에서 연방의 재정지원이 혼합된다.

3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청소년청(Jugendamt)에서 베이비시터(Tagesmütter oder -väter)를 소개할 수 있다(「사회법전」 제8권 제31조).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형태의 하나로서 사회교육적 가족지원에 해당하며 청소년청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

다. 이와 달리 3세 이상의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일반유치원(Regel-kindergarten)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며, 비장애인과 함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합유치원(Integrative Kindergärten)에서는 모든 그룹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러한 통합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와 관용을 함양하는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들이 장애아동을 개별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원도 제공된다.

그밖에 장애아동이 혼자 등·하교하거나 부모가 동반할 수 없는 경우에 '등·하교길 지원(Schulweghilfe)'을 관할 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정적 지원은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 제한된다.

2) 조기지원(Frühförderung)

장애아동의 경우 조기발견 또는 조기대응을 통해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장애정도를 경감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상담과 정확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조기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기지원은 영유아에서 출학연령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적으로 의학적,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조기지원은 사전배려로서 1970년대에 도

입되었다. 2001년 이후 사회법전 제9권에서 사회적, 심리학적, 의학적, 치료적인 지원을 포괄하는 복합급부로 정의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회법전」 제5권(법정질병보험)에 따라 의학적, 심리치료적 급부에 해당한다.

3) 적응지원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은 비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대표적으로 1993년 적응지원(Eingliederungshilfe)을 도입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장애의 위험이 있는 아동을 특별히 배려하고 있다(「사회법전」 제8권 제35a조). 이는 아동의 사회교육적 필요성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회부조법(「사회법전」 제12권)과의 중첩성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적응지원은 정신적 장애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6개월 이상 있고 사회적 복귀가 어렵거나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주어진다. 이러한 적응지원은 15세 이상이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정신적 장애는 과잉행동, 식사장애, 읽기·쓰기 장애, 중독질환, 자살충

동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며, 지원형태는 응급지원, 보호시설, 입원시설 및 기타 보호시설, 돌봄도우미 제공 등이다. 이러한 적응지원을 제공할지 여부는 청소년청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한다.

(3) 리스터연금의 자녀보조금

리스터연금(Riester-Rente)²⁷⁾에 가입한 사람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 특별수당(Zuschläge)을 받을 수 있다. 리스터연금은 2002년 「노후자산법(Altersvermögensgesetz: AVmG)」²⁸⁾에 의해 국가적 지원을 수반한 개인연금으로 도입되었으며, 「소득세법」 제10a조와 제7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녀보조금은 자녀가 많을수록 유익하다. 보조금은 2008년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300유로, 그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185유로를 지원한다. 그러므로 25년간 리스터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국가로부터 최대 7,500유로의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리스터연금의 자녀보조금은 아동수당(Kindergeld) 수급권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혼한 경우에는

27) 리스터연금은 노동사회부 장관이었던 '발터 리스터(Walter Riester)'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으며, 2000/2001년 법정연금 보험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리스터연금은 '인증제 개인연금'으로 국가적 인증과 지원을 통하여 다층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강화에 기여한다. 주된 지원형태는 보조금과 세제혜택이다.

28) BGBl. I S. 1310 vom 26. Juni 2001.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부모 일방만이 지급 받을 수 있다.

8. 재정부담

아동양육지원을 위한 재정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며, 주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대체로 지원금 또는 보조금(Zuwendungen)과 급부보상(Leistungsentgelte)의 형태로 구분된다(제74조, 제77조 및 제78조). 급부보상은 급부보장자인 청소년청과 급부이행자인 민간시행기관 사이의 공법적 계약에 근거한 비용 상환 또는 임금에 관한 합의를 의미하며, 급부합의(Leistungsvereinbarung), 보상합의(Entgeltvereinbarung), 질적성장합의(Qualitätsentwicklungsvereinbarung)로 세분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은 ‘이용자(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급자의 비용 참가를 인정한다. 이러한 비용부담은 지원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부모나 부양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아동수당(Kinderergeld)으로 대체할 수 있다.

IV. 결론

독일은 아동양육지원법제를 개선함으로써 아동학대는 별론으로 하고 일·가정 양

립의 어려움으로 인한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법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모성보호와 양육지원을 통해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육아휴직제도를 강화하여 부모 공동의 육아책임과 휴직 후 직장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수당과 보육지원금을 다양화하여 아동양육으로 인한 소득단절과 빈곤을 예방하고 있으며, 아동수당 및 아동보조금을 증액하여 물가상승률에 부합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아동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아울러 독일의 아동양육지원법제는 교육지원을 통해 아동의 교육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가정의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3층에 해당하는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저출산정책과 연계하여 자녀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부족해 질 수 있는 노후대비를 강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의 아동양육지원법제는 매우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가정을 통한 아동

의 양육을 실현하고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아동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 직접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저출산과 아동학대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의 양육지원법제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사실

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조속히 현재의 양육지원법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김영미

(사회자본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BMFSFJ(Hrsg.), Kinder- und Jugendhilfe – Achtes Buch Sozialgesetzbuch, 2014.5.

Regina Rätz-Heinisch, Kinder- und Jugendhilferecht, Reader zur Lehrveranstaltung und zur Klausurvorbereitung, Stand: 01.04.2010.

김영미, “독일의 노후소득보장법제와 시사점”, 「사회보장법학」 제3권 제1호, 2014.

조성혜, “독일의 양육 관련 법제와 출산장려정책”,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2007.

<http://www.bmfsfj.de/BMFSFJ/Familie/leistungen-und-foerderung.html>.

https://www.familienratgeber.de/selbstbestimmt_leben/staatliche_hilfen/index.php.

<http://www.elternwissen.com/familienfinanzen/staatliche-hilfen-fuer-familien.html#artikel-liste>.